

2025학년도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 신규 공모 요강

2025. 7.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처**

# 산학협력단 산하 연구센터 신규 공모

## I 지원 목적

1. 중대형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국가 R&D 전략과제 개발)
2. 학제간 융합연구 활성화
3. 우리대학 연구 특성화 분야의 신규연구과제 개발 및 연구실적 제고
4. 첨단 대학부설연구기관 신설 기반조성

## II 공모개요 및 연구분야

### 1. 공모개요

구분	내용												
대상	본교 전임교원 ※ 3년 이내 폐쇄 이력이 있는 연구센터장은 신규 공모 신청 불가(구성원으로는 참여가능)												
연구센터 구성 조건	소속학과(부)가 다른(2개 이상)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 ※ 전공계열이 다를 경우 우대												
연구비 (운영 재원)	1) 연구센터 배분 간접비 - 참여교원이 외부연구비 수주한 경우, 간접비 배분을 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적립(「간접비 징수 및 지원에 관한 내규」에 따른 일정 비율) 2) (해당 시)포상 - 연구센터 운영평가 결과 우수 연구센터 포상([별표3] 기준에 따름)												
운영평가	[별표 2] 기준에 따라 연구센터 운영평가를 연 1회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 또는 폐쇄 등의 조치가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조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포상</td> <td>평가결과 A, B등급</td> <td>간접비 추가 배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소 승격</td> <td>평가결과 2년 연속 A등급</td> <td>연구소 승격 요청 가능(학술연구위원회 심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폐쇄</td> <td>평가결과 3년 연속 D등급</td> <td>연구센터 폐쇄</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조치사항	포상	평가결과 A, B등급	간접비 추가 배분	연구소 승격	평가결과 2년 연속 A등급	연구소 승격 요청 가능(학술연구위원회 심의)	폐쇄	평가결과 3년 연속 D등급	연구센터 폐쇄
구분	기준	조치사항											
포상	평가결과 A, B등급	간접비 추가 배분											
연구소 승격	평가결과 2년 연속 A등급	연구소 승격 요청 가능(학술연구위원회 심의)											
폐쇄	평가결과 3년 연속 D등급	연구센터 폐쇄											
센터 설치	2025년 9월 1일												

### 2. 연구분야

연구분야	내용
5개 중 택1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 스마트시티 / AI / 자유

### III 신청 및 선정 절차

#### 1.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신청 접수	2025. 7. 16.(수) ~ 2025. 7. 30.(수)	전자메일 접수(ris@sm.ac.kr)
심의	2025. 8월 중 (예정)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진행
선정통보	2025. 8월 말 (예정)	개별 통보
연구센터 운영기간	2025. 9. 1. ~	
운영비 사용기간	간접비 배분 시 ~ 센터 폐쇄 시	연구센터장을 연구책임자로 과제 생성하며, 폐쇄 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산학협력단에 귀속함
운영평가	2026. 9월 (예정)	연구센터 운영평가 연 1회 실시

#### 2. 신청방법 및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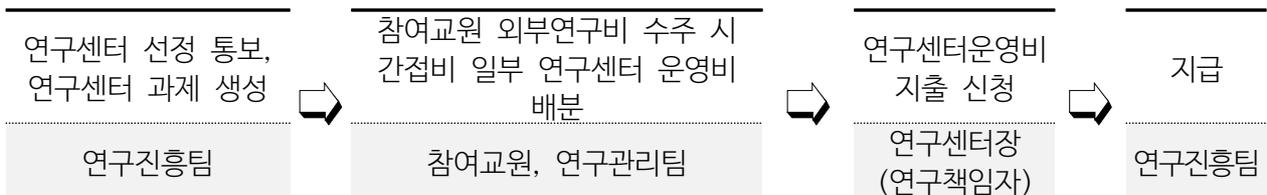
가. 신청서류: 2025학년도 연구센터 신청서(양식), 실적 목록(양식) 및 증빙 제출

나. 제출방법: 신청교원(연구센터장)이 연구진흥팀 대표메일로 위의 서류 제출(신청서에 서명 필수/ 제출처: ris@sookmyung.ac.kr)

다. 선정기준: [별표1] 연구센터 설치 심의기준, <심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 IV 연구센터 운영비 지급 및 관리

#### 1. 연구센터 운영비 지급 절차



#### 2. 연구센터 운영비 집행

가. 집행기준

- 1) 연구센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
- 2) 연구비에서 인정하는 모든 비용으로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관리 및 집행 지침을 따름
- 3) 기자재

나. 사용 불가 항목

- 1) 사적용도 사용: 안경, 차량유지비, 주류, 개인성 도서 등
- 2) 인센티브
- 3) 경조사비 및 화환구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구매, 유류대금
- 4) 설치공간 추가가 필요한 기자재

다. 지출 신청 방법: 센터 구성원(센터장 및 참여교원)이 집행한 건에 한하여 연구센터장이 청구

- 1) 속명포탈>연구>연구관리>지출관리에서 입력하고 신청
- 2) 모든 증빙서류는 전자증빙으로 업로드

※ 적격증빙 사용 필수(법인카드, 산학협력단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 V 연구센터 운영평가 (2026년 9월 예정)

### 1. 연구센터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가. 운영평가 항목 및 실적기간

평가 항목	실적 기간	제출 기한
외부연구비 수주실적(개인/공동), 외부과제신청 실적(개인/공동), 간접비 기여율, 참여연구원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2025. 9월 ~ 2026. 8월	2026. 9월 중(예정)

나. 결과물 인정 기준

- 1)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된 경우
- 2) 논문의 경우 본인이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인 경우  
(논문에 주저자가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함)  
\* 논문에 주저자 표기가 없으나, 소속 학회의 논문투고규정 및 학회의 확인서를 통해 주저자(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다. 증빙자료

- 1) 논문 : 학술지 발간 완료된 논문
  - 논문 PDF 인쇄본 또는 학술지 복사본 제출
  - 연구 신청자가 주저자인 논문(주저자 명기)
- 2) 특허 및 기술이전: 특허등록증, 기술이전 계약서 등
- 3) 저서 : 발간된 저서 ISBN 번호

라. 제출방법

- 1) 그룹웨어>전자결재>일반 기안문 작성>결재요청(수신처: 연구진흥팀)
- 2)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기안문에 첨부

### 2. 운영평가 학술연구위원회 심의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위원회에서 평가

※ 연구센터 설치/운영평가/포상 기준 (연구센터 운영지침 별표)

[별표 1] 연구센터 설치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정량평가	연구실적 (최근3년)	- 연구센터 소속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 단, 간접비 징수 및 연구·산학지원에 관한 내규 제3조 1항에 인정되는 과제만 실적으로 인정함.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논문(주저자만가능), 특허등록, 저서, 기술이전 등	70
정성평가	연구센터 발전계획	<연구센터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 연구주제의 적합성 및 연구비 수주 계획 - 대외활동 계획	30
합계			100

※ 제외 기준 실적

- 모든 항목의 결과물은 타기관(연구소 및 연구센터) 평가와 중복할 수 없음
- 교원이 행정부서 보직을 맡아 해당부서에서 수행된 실적물 제외

<심의 평가기준표>

평가지표		평가 기준	실적 기준	배점
연구실적 (최근3년) (70)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만점실적 기준으로 제출실적 대비 점수를 산정하여 평가함	2억 원 이상	35
	참여연구원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논문, 특허등록, 기술이전, 저서 등) ※논문은 주저자 실적만 인정	만점실적 기준으로 제출실적 대비 점수를 산정하여 평가함 논문(국내, 국제), 특허등록, 기술이전 1:1로 인정	10건 이상	35
연구센터 발전계획 (30)	연구주제의 적합성 및 연구비 수주 계획	연구주제가 정부의 최신 R&D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및 연구비 수주 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평가	15점 만점	
	대외활동 계획	연구센터 대외활동의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등을 평가	15점 만점	

※ 아래 두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설치를 승인한다.

- 1) 총점 7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평가위원 평균)
- 2) 4개의 각 평가지표별 배점의 1/2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경우(평가위원 평균)

※ 연구실적은 지표별 만점실적 기준으로 제출실적 대비 점수를 산정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 처리함

<산식>

$$\text{지표점수} = \frac{\text{지표별 배점}}{\text{지표별 만점 기준 실적}} \times \text{제출 실적}$$

(예시) 연구센터 신청 구성원의 최근 3년간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합계 1억 6천5백만 원 = 28.88점

$$28.88\text{점} = \frac{35}{2\text{억}} \times 1\text{억 } 6\text{천 } 5\text{백만} \quad (28.875 \text{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별표 2] 연구센터 운영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정량평가	연구센터 운영실적 (최근1년)	1. 연구센터 소속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	15	
		2. 연구센터 소속 연구자 2인 이상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수행한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	30	
		3. 연구센터 소속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외부 과제신청 횟수	15	
		4.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 논문(주저자만가능), 특허등록, 저서, 기술이전 등	20	
		5. 본 연구센터 간접비 기여율 - 소속 교원 수주 연구비 중 연구센터 배분 간접비 적립액 - 연구센터 지정 발전기금 입금액 - 소속 교원 기술이전 실적 일부 <sup>1)</sup>	20	
		합 계	100	
		연구센터 소속 연구자 2인 이상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신청한 외부 과제신청 횟수(대형과제 중심)	+20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70점 미만

1) 소속 교원의 기술이전에 따른 입금액(발명자 보상금 제외)을 간접비 징수 및 연구·산학협력에 관한 내규상 연구센터에 배분되는 비율을 적용한 금액

※ 평가결과 연구센터 유지·폐쇄·연구소 승격할 수 있음.

※ 제외 기준 실적

- 모든 항목의 결과물은 타기관(연구소 및 연구센터) 평가와 중복할 수 없음.
- 교원이 행정부서 보직을 맡아 해당부서에서 수행된 실적물 제외

〈운영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계열별 기준		점수
	인문사회·예체능·융합	자연과학·공학	
1. 연구센터 소속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한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 ※ 계열별 만점실적 기준으로 제출실적 대비 점수를 산정함	6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상	15
2. 연구센터 소속 연구자 2인 이상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수행한 교외연구비 수주 실적(다년도 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 금액 포함) ※ 계열별 만점실적 기준으로 제출실적 대비 점수를 산정함	1억 2천만 원 이상	4억 원 이상	30
3. 연구센터 소속 전임교원이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외부 과제 신청 횟수	5건 이상		15
	4건 이상		12
	3건 이상		9
	2건 이상		6
	1건		3

4.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논문(주저자만가능), 특허등록, 저서, 기술이전 등	5건 이상		20
	4건 이상		17
	3건 이상		14
	2건 이상		11
	1건		8
5. 본 연구센터 간접비 기여율 ※ 최고점을 기준으로 실적을 비율로 반영하여 평가함	480만 원 이상	1천 6백만 원 이상	20
연구센터 소속 연구자 2인 이상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 신청한 외부 과제신청 횟수(대형과제 중심)	1건당 최소 연간(평균)연구비 기준		
	2천 5백만 원	5천만 원	
	3건 이상	3건 이상	20
	2건	2건	17
	1건	1건	15

※ 1, 2, 5번 실적은 계열별 만점실적 기준으로 제출실적 대비 점수를 산정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함.

<산식> 
$$\text{지표점수} = \frac{\text{제출 실적}}{\text{계열별지표 만점 기준 실적}} \times \text{지표별 배점}$$

(예시) 자연과학 계열 연구센터 간접비 기여율 12,365,000원 = 15.46점

$$15.46\text{점} = \frac{12,365,000}{16,000,000} \times 20 \quad (15.456 \text{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1번 교외연구비 수주실과 2번 교외연구비 공동 수주실적은 중복 평가할 수 없음.

※ 연구센터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는 0점 처리함.

[별표 3] 연구센터 운영평가 결과 포상 기준

구분	간접비 추가 배분	비고
A등급	연구센터 배분 간접비의 50%	[별표2]연구센터 운영 평가기준 항목 '5. 연구센터 간접비 기여율'에서 평가대상 기간 내 연구센터로 배분된 간접비를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일정비율로 추가 배분함 ※ 연구센터 지정 발전기금이나 기술이전 실적 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B등급	연구센터 배분 간접비의 20%	
C, D등급	없음	